농업생명과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1년 9월 1일
개정 2005년 3월 15일
개정 2015년 1월 19일
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19년 6월 24일
개정 2021년 3월 1일

제1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농업생명과학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및 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명
2. 편집간사 1명
3. 편집위원 약간명

제3조(위원의 임무, 임명, 임기)

1. 편집위원장(Editor in chief)은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외부인사들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3.1.)
2. 편집위원회 간사는 원장이 따로 정하며,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간사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지 편집과 발간의 실무를 책임진다. 편집위원은 책임연구원 및 외부인사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농업생명과학연구의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5. 농업생명과학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장은 국내외 석학들을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을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7. 투고 논문은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년 6월 24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년 3월 1일)